

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우리구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 「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3월 7일

광진구청장



1. 사업명 :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

2. 지원대상 :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아래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

- 기간 : '22. 1월 ~ 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
- 건물 : 「상가임대차법」에서 규정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
※ 환산보증금(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) : 보증금 + (월세 × 100)

〈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〉

- ▶ 「상가임대차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
※ 부가가치세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
- ▶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
 - 동창회, 종교단체, 자선단체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임대차 제외
 - 단순 물품 보관 창고, 사무업무를 위한 일반 사무실 용도는 제외
- ▶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 -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, 임원 · 사용인 등
- ▶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(별표14)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
 - 사행행위, 과세유홍업 등(붙임6)
- ▶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는 아래 요건 충족 할 것
 -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

3. 지원내용 : 임대료 인하 구간별 '서울사랑상품권(모바일상품권)' 지급

총 임대료 인하 구간	상품권 지원금액
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	30만원
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	50만원
1천만원 이상	100만원

※ 유의사항 :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수(제7조 및 제13조)

-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**재판매하거나 환전을** 요구하여서는 안됨
- 사용자는 상품권을 위법행위에 이용하거나 위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유통하여서는 안됨
-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

4. 신청방법

가. 제출장소 : 광진구청 지역경제과(광진구 자양로116 웰츠타워 212호)

나. 제출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우편)

다. 제출서류

〈신청 시〉

- 상생협약서(붙임 1),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(붙임 2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붙임 5) *임대인, 임차인 모두 제출
- 임대차계약서 사본(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 모두 제출)
-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등의 해당 상가 소유권 증빙서류

※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: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

〈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〉

- 임대료 인하액 확인가능 증빙서류(금융거래내역, 세무서에 신고된 세금계산서 등)

라. 신청기간 : '22. 3. 7.(월) ~ '22. 4. 29.(금), (평일 09:00~18:00)

-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마. 선정결과 : 임대인에게 유선 또는 문자 등 통보

5. 유의사항

- 가. 제출된 자료의 오류, 오기, 실수(단순 실수 포함), 보완 등의 사유로 인한 자료정정은 신청기간 내에는 가능하나 신청기간 이후에는 정정이 불가하며 정정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인이 감수해야 합니다.
- 나.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합니다.
- 다. 상생협약 기간 중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합니다. 승계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.
- 라. 상품권을 지급받은 임대인이 상생협약 기간 중 건물 양도 시 상생협약 내용을 신규 건물주(임대인)에게 통지하고, 신규 건물주(임대인)는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야 합니다. 승계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인은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금액 및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합니다.
- 마. 임대인은 상생협약 이행 종료 시(제출기한: '22.12.31.까지) 상생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료 지급 관련 자료(금융거래내역, 세무서에 신고된 세금 계산서 등)를 해당 신청 자치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※ 부정 수령, 협약 미이행 등 관련해서는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적용
- 바.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모바일상품권으로 스마트폰에 상품권 서비스 이용 가능한 APP(앱)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 상품권 수령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상품권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.
※ 상품권 관련 문의 안내는 선발 후 별도 안내 예정
- 사. 임차인(전차인)의 업종이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제외 업종(붙임 6)에 해당 될 경우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6. 기타사항

가. 신청서 등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 서울시 홈페이지 → 고시공고 → 검색창(착한 임대인 지원사업)

나. 기타 사항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(☎2133-5158)과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(☎450-737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상생협약서 1부.

2.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1부.

3. 위임장 1부.

4.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자치구별 담당부서 1부.

5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

6.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임차인 제외 업종 1부. 끝.